

해양공간 관리계획 표준품셈

2021. 0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제 1 장 총 칙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1-3 용어의 정의	1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2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2
1-6 세부시행기준	2

제 2 장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변경)	3
------------------------------	---

제 3 장 해양공간 특성평가	10
-----------------------	----

제 4 장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15
------------------------	----



▶ 제1장 총 칙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1-6 세부시행기준

제 1 장 총 칙

1-1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절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 ①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변경)
- ② 해양공간 특성평가
- ③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1-3 용어의 정의

-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2) “직접인건비”란 당해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투입인원수”란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투입된 인원수를 말한다.
- 4) “기본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하며, 본 표준품셈의 투입인원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업무이다.
- 5) “추가업무”란 기본업무 외에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여 과업지시서에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 6) “기준인원수”란 기본업무별 1단위(면적, 회, 식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 투입된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물량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일)은 1인이 8시간 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업무량을 기준한 것이다.
- 7) “환산계수”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규모와 표준단위 규모의 차이에 따른 업무의 유사성, 반복성을 적용수량에 반영하여 적절한 설계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한 계수이다.

- 8) “보정계수”란 환산계수와 함께 소요인력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이다.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 1) 전체 투입인원수는 각 업무별, 등급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 2) 각 업무별, 등급별 기준인원수는 각 장에 정하는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 3) 산정방법은 각 업무별 적용수량을 바탕으로 환산계수를 산정한 후에 각 업무별 기준인원수와 환산계수,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각 업무별, 등급별 기준인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한다.
- 4) 제시된 업무 이외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인력을 계상하여 합산할 수 있다.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과업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기본업무는 생략,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업무별 업무정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입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1-6 세부시행기준

- 1) 이 표준품셈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변경사항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2) 기본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지 못하는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자료의 조사·수집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대가를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표준품셈은 2022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장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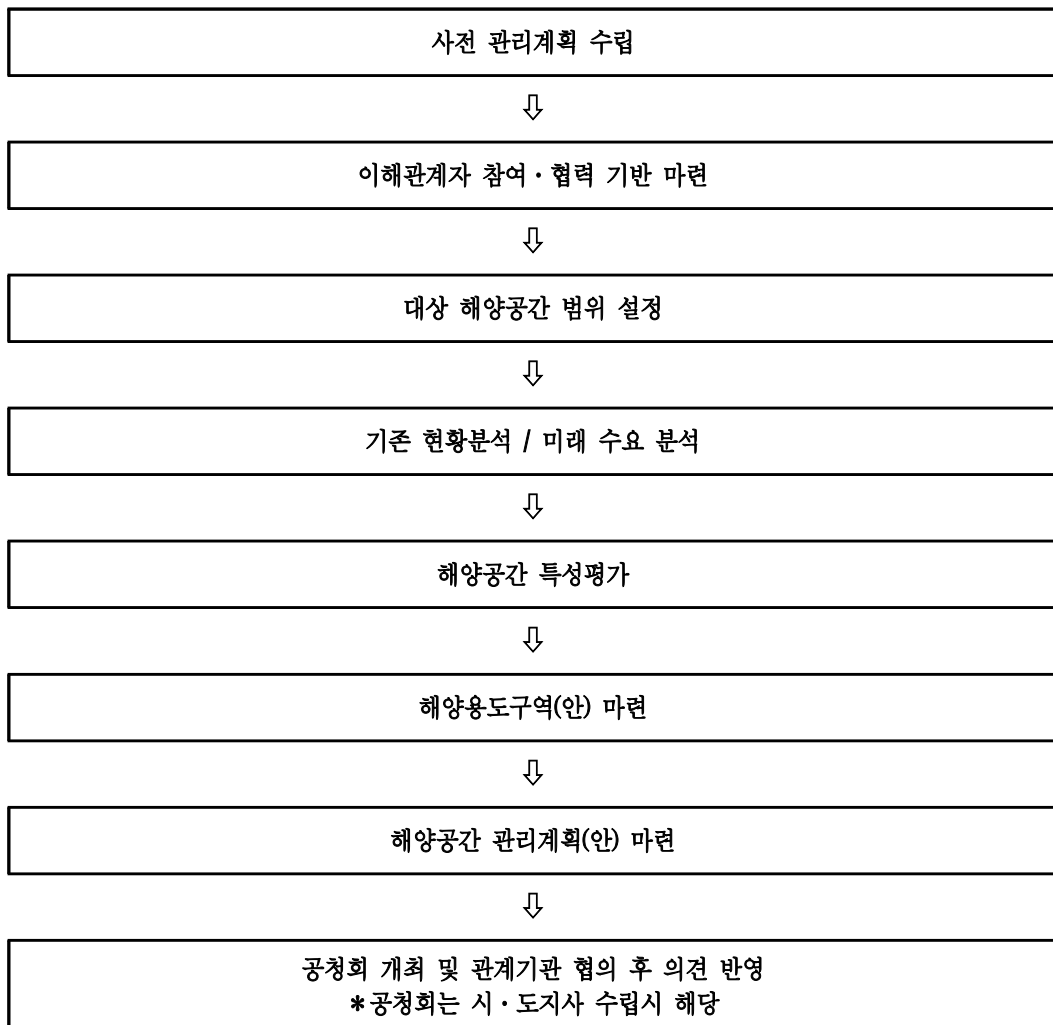
제 2 장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변경)

가.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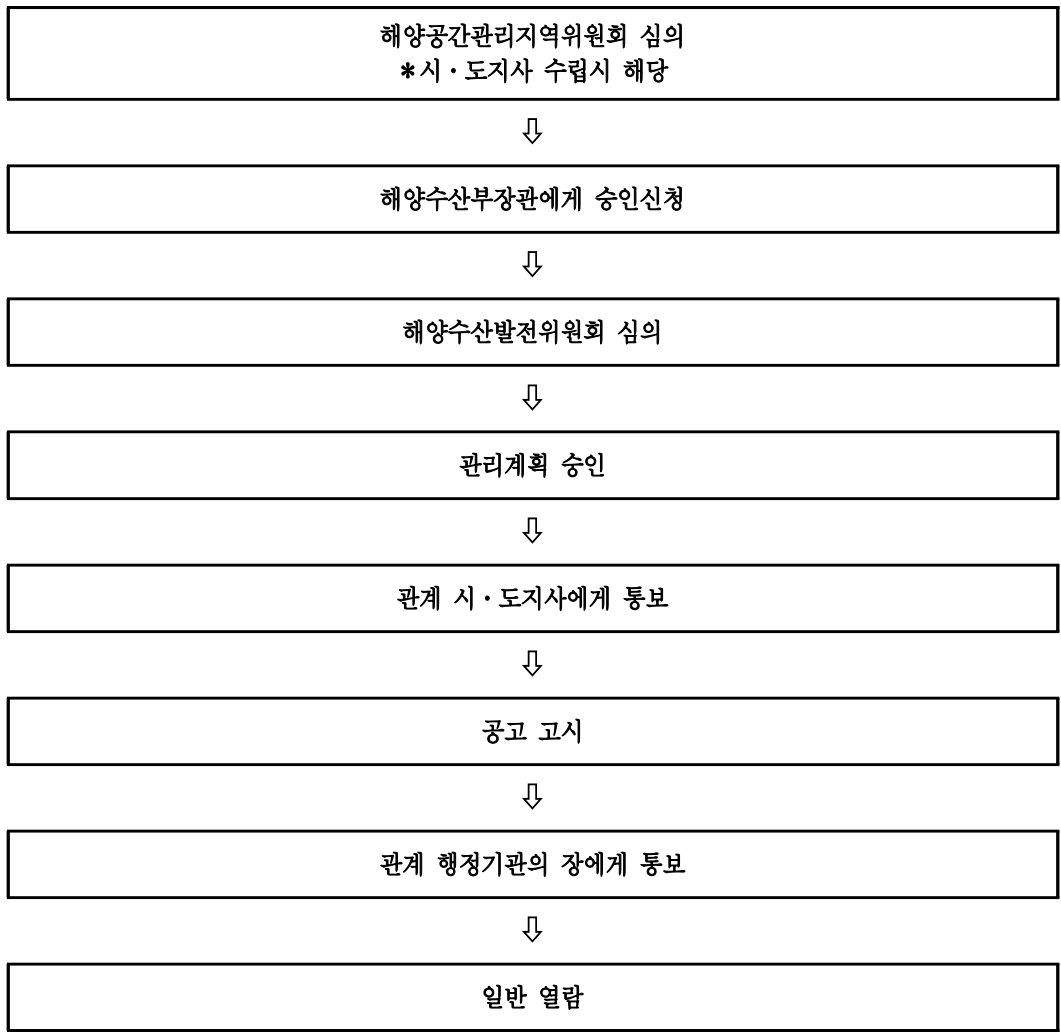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제7조3호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해당되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변경)”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말한다.

나. 추진절차

(1) 관리계획(안) 작성



(2) 관리계획 승인



다. 업무별 주요내용

기본 업무		업무 정의
기본구상 및 정책방향	기본구상 설정	· 해양공간 배분 및 관리 방향, 해양공간관리에 대한 이해상충 조정방향 마련
	정책방향 마련	·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마련
공간 설정	대상 해양공간 설정	· 계획수립 대상해역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해안선 및 지적선 자료조사 및 수집, 계획수립 대상해역 설정 및 조정
조사 및 분석	지역인식 조사 및 분석	·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의 해양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및 분석
	지역현황 조사	· 대상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개발 계획 수요 파악(국가 및 광역/도), 환경적·생태적 특성 조사, 해양이용·개발 현황 및 수요(시군구) 조사, 해양공간관리 현황 조사, 해양공간의 타법률 지구지정 현황 조사, 공유수면점사용 현황 수집(관련 기관 공문 시행)
	해양공간정보 조사	· GICOMS, VPASS, 낚시어선등록 현황 데이터 수집 및 가공
	타 법률 등 조사	· 관계 법령 검토, 유관 계획과의 상관성 검토
	공간분석 및 현안파악 (지역특성 및 여건분석)	· 해양공간의 공간구조 파악, 해양공간관리 현안, 핵심활동별 공간분석
용도구역 지정	용도구역 기획	· 해양공간 기능 배분, 해양용도구역 기획
	용도구역 조정	· 해양용도구역 상층 분석, 해양용도구역 조정 기준 설정, 해양용도구역 지정
	관리구역 설정	·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관리 및 이행방안 수립	용도구역 관리 및 이행방안 수립 (지속적이용개발 보전 포함)	· 해양용도구역별 권장 해양 이용 및 활동 작성, 해양용도구역별 관리방안 작성, 해양용도구역별 해양공간 관리사항 작성, 해양공간관리 이행방안 작성, 해양공간관리계획 이행점검 및 평가 방법 작성
작성 및 관리	성과품 작성	·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작성, 계획 설명서 작성
	해도제작	· 해양공간계획도서 제작
	DB 및 정보 시스템 구축	· 해양용도구역 및 관리구역 DB화,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작성
계획 지원 업무	이해관계자 협의, 지역협의회 등 지원	· 이해관계자 조사 및 분석, 참여방식 설계, 시군구 설명회개최, 주요이해관계자 설명회개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원, 지역협의회 개최지원(자료작성 및 현장지원), 지역협의회 의견검토 및 관련자료 수집, 공청회개최지원(자료작성 및 현장지원)
	조례 제/개정 업무지원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심의지원	· 관계부처 의견조회 지원(자료작성), 관계부처 의견 검토 및 관련 자료 수집,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지역위원회 심의 지원(자료작성 및 현장 지원), 지역위원회 심의 의견 검토 및 관련 자료 수집,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지원(자료작성),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의견 검토 및 관련 자료 수집

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기준인원수)

(1)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광역자치단체)

기본 업무	단위	기준인원수(인·일/단위)				환산 및 보정계수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기본구상 및 정책방향	기본구상 설정	식	10.90	9.30	6.30	5.00	②③
	정책방향 마련	식	20.40	14.20	10.80	4.10	②③
공간 설정	대상 해양공간 설정	5,000(km ²)	8.10	13.00	12.50	7.00	①②③
조사 및 분석	지역인식 조사 및 분석	5,000(km ²)	7.10	17.00	19.40	19.50	①②③
	지역현황 조사	5,000(km ²)	7.80	27.20	36.20	32.30	①②③
	해양공간정보 조사	5,000(km ²)	17.60	35.10	36.60	27.80	①②③
	타 법률 등 조사	5,000(km ²)	3.40	11.80	16.90	12.90	①②③
	공간분석 및 현안파악 (지역특성 및 여건분석)	5,000(km ²)	33.60	29.80	22.00	18.10	①②③
용도구역 지정	용도구역 기획	5,000(km ²)	67.30	58.50	61.40	46.80	①②③
	용도구역 조정	5,000(km ²)	94.20	66.30	66.30	52.30	①②③
	관리구역 설정	5,000(km ²)	63.80	47.30	44.90	33.10	①②③
관리 및 이행방안 수립	용도구역 관리 및 이행방안 수립 (지속적이용개발 보전 포함)	5,000(km ²)	18.50	22.50	17.50	13.50	①②③
작성 및 관리	성과품 작성	식	15.50	29.50	36.60	30.90	
	해도제작	셀	0.00	0.50	1.00	5.00	④
	DB 및 정보 시스템 구축	식	10.40	26.70	31.80	34.70	
계획 지원 업무	이해관계자 협의, 지역협의회 등 지원	회	13.50	18.90	23.40	16.20	③
	조례 제/개정 업무지원	식	9.50	9.50	4.10	4.10	③
	심의지원	회	12.40	13.50	10.10	9.00	③

주 1) 해도제작 : 해도제작에 필요한 기계비, 재료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 상각비 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SW포함) 상각년수는 5년, 가동 일수는 278일 기준으로 한다.
- 컴퓨터(SW포함)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 :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365일) × 0.1

(2) 해양공간 관리계획 변경(기초지자체)

기본 업무		단위	기준인원수(인·일/단위)				환산 및 보정계수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기본구상 및 정책방향	기본구상 설정	식	0.70	0.60	0.40	0.30	②③
	정책방향 마련	식	1.20	0.90	0.70	0.20	②③
공간 설정	대상 해양공간 설정	1,000(km ²)	0.50	0.80	0.80	0.40	①②③
조사 및 분석	지역인식 조사 및 분석	1,000(km ²)	0.40	1.10	1.20	1.20	①②③
	지역현황 조사	1,000(km ²)	0.50	1.70	2.20	2.00	①②③
	해양공간정보 조사	1,000(km ²)	1.10	2.20	2.30	1.70	①②③
	타 법률 등 조사	1,000(km ²)	0.20	0.70	1.10	0.80	①②③
	공간분석 및 현안파악 (지역특성 및 여건분석)	1,000(km ²)	2.00	1.80	1.30	1.10	①②③
용도구역 지정	용도구역 기획	1,000(km ²)	4.10	3.60	3.80	2.90	①②③
	용도구역 조정	1,000(km ²)	5.80	4.10	4.10	3.20	①②③
	관리구역 설정	1,000(km ²)	3.90	2.90	2.80	2.00	①②③
관리 및 이행방안 수립	용도구역 관리 및 이행방안 수립 (지속적이용개발 보전 포함)	1,000(km ²)	1.10	1.40	1.10	0.80	①②③
작성 및 관리	성과품 작성	식	0.90	1.80	2.20	1.90	
	해도제작	셀	0.00	0.50	1.00	5.00	④
	DB 및 정보 시스템 구축	식	0.60	1.60	1.90	2.10	
계획 지원 업무	이해관계자 협의, 지역협의회 등 지원	회	0.80	1.20	1.40	1.00	③
	조례 제/개정 업무지원	식	0.60	0.60	0.30	0.30	③
	심의지원	회	0.80	0.80	0.60	0.60	③

주 1) 해도제작 : 해도제작에 필요한 기계비, 재료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 상각비 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SW포함) 상각년수는 5년, 가동 일수는 278일 기준으로 한다.
- 컴퓨터(SW포함)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 :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365일) × 0.1

마.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1)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광역자치단체)

구분	항목	세부내용	비고
환산계수	① 면적	$\cdot \left(\frac{A}{5,000} \right)^{0.20}$ ※ A = 사업 대상면적	소수점 2째 자리 이하 버림
	보정계수	② 해양활동 상충도	
③ 자치단체 수		• 자치단체 1개 : 1.00 • 자치단체 2개 이상 : 1.10	
④ 축척별 난이도		• 1/3만 미만 : 1.00 • 1/3만 초과 ~ 1/35 만만 : 1.29 • 1/35 초과 : 1.14	

주 1) 해양활동 상충도 : 특수사업 - 관리계획 수립(변경) 대상 용도구역이 현 지정된 용도구역의 핵심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등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
 ex) 어업활동보호구역⇒에너지개발구역, 환경·생태관리구역⇒해양관광구역

(2) 해양공간 관리계획 변경(기초지자체)

구분	항목	세부내용	비고
환산계수	① 면적	$\cdot \left(\frac{A}{1,000} \right)^{0.20}$ ※ A = 사업 대상면적	소수점 2째 자리 이하 버림
	보정계수	② 해양활동 상충도	
③ 지자체 수		• 지자체 1개 : 1.00 • 지자체 2개 이상 : 1.10	
④ 축척별 난이도		• 1/3만 미만 : 1.00 • 1/3만 초과 ~ 1/35 만만 : 1.29 • 1/35 초과 : 1.14	

주 1) 해양활동 상충도 : 특수사업 - 관리계획 수립(변경) 대상 용도구역이 현 지정된 용도구역의 핵심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등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
 ex) 어업활동보호구역⇒에너지개발구역, 환경·생태관리구역⇒해양관광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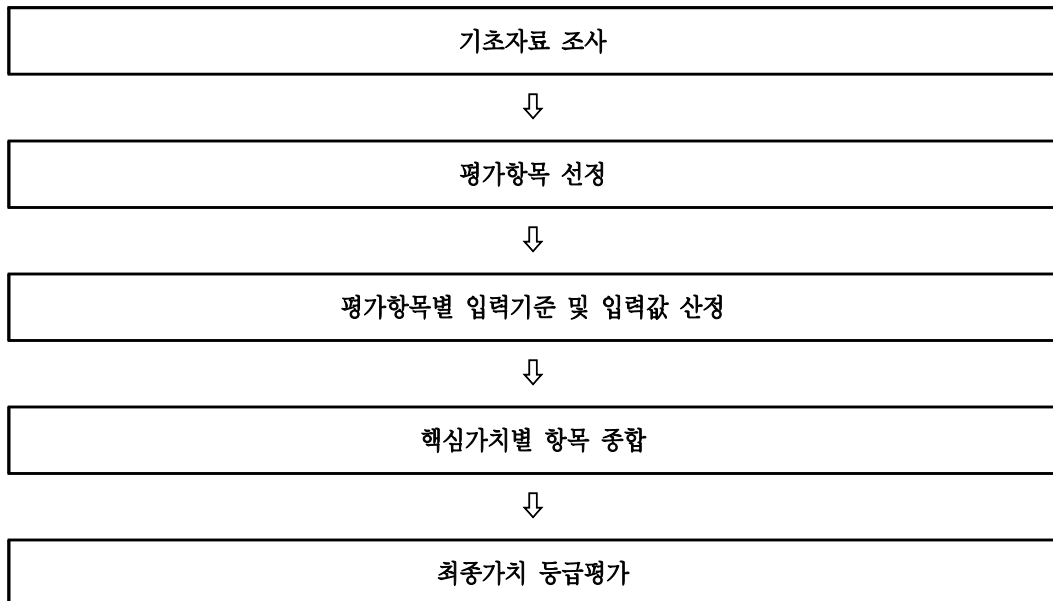
▶ **제3장 해양공간 특성평가**

제 3 장 해양공간 특성평가

가. 정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에 해당되며, “해양공간 특성평가”란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이하 “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해양공간정보를 활용한 특성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나. 추진절차



다. 업무별 주요내용

기본 업무		업무 정의
해양공간 특성평가 구상	특성평가대상해역 설정	· 관련법규 검토, 공간격자망 구성 및 생성, 최외각 경계 추출 및 공간정보화 설정
	평가항목 정의	· 주요 해양활동(해양자원의 부존현황 및 가치,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특성,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현황, 해양공간의 미래 활용) 수요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용도구역별 평가항목 정의
해양공간정보 수집 및 처리	자료선정 및 수집	· 각 평가항목 별로 분석에 필요한 자료수집 대상 선정 및 수집, 자료 QC 및 신뢰성 검토
	자료처리 및 분석	· 특성평가에 적합한 자료의 속성정보 선정/추출 및 공간정보화, 공간특성평가 활용 가능한 자료 가공/변환, 해양공간정보 처리 및 분석(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의 추가 필요)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공간정보 격자화	· 대상 해역의 공간특성평가지도 제작을 위한 격자망과 해양공간자료 중첩 및 점수산정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및 지도제작	· 평가항목에 따라 격자별 점수 표준화(산정법) 제시 및 도시화, 각 평가항목의 결과를 합산하여 통합점수 산정 및 격자별 속성정보 입력
해양공간 상층분석	용도구역별 상층분석	· 용도구역별 공간특성평가지도 중첩하여 상층분석용 격자망도 공간정보 제작, 중첩분석을 통한 용도구역간 상층지수 산정방법 제시 및 평가/분석
자료관리	성과품 작성	· 공간특성평가 보고서 작성(항목, 평가기준)
	해도제작 (특성평가지도 및 상층분석)	· 개별 평가항목 특성평가지도, 용도구역별 공간특성평가지도, 상층분석 결과지도 제작
	DB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자료처리 및 분석 결과 DB화, 공간특성평가 격자 데이터 DB화, 상층분석 결과 공간자료 DB화

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기준인원수)

기본 업무		단위	기준인원수(인·일/단위)				환산 및 보정계수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해양공간 특성평가 구상	특성평가대상해역 설정	식	3.80	9.60	4.20	7.50	②③
	평가항목 정의	식	8.30	5.00	14.40	5.60	②③
해양공간 정보 수집 및 처리	자료선정 및 수집	5,000(km ²)	7.80	11.70	19.40	19.40	①②③
	자료처리 및 분석	5,000(km ²)	18.00	20.80	25.00	19.40	①②③
용도구역 별 특성평가	공간정보 격자화	5,000(km ²)	2.80	7.00	15.30	16.70	①②③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및 지도제작	5,000(km ²)	19.90	27.10	30.70	30.70	①②③
해양공간 상층분석	용도구역별 상층분석	5,000(km ²)	17.80	17.80	17.80	13.30	①②③
자료관리	성과품 작성	식	4.60	5.40	7.50	7.50	
	해도제작 (특성평가지도 및 상층분석)	셀	0.00	0.50	1.00	5.00	④
	DB 및 정보시스템 구축	식	4.40	5.60	10.00	13.30	

주 1) 해도제작 : 해도제작에 필요한 기계비, 재료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 상각비 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SW포함) 상각년수는 5년, 가동 일수는 278일 기준으로 한다.
- 컴퓨터(SW포함)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 :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365일) × 0.1

마.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구분	항목	세부내용	비고																																																																																																
환산계수	①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ft(\frac{A}{5,000}\right)^{0.15}$ ※ A = 사업 대상면적 	소수점 2째 자리 이하 버림																																																																																																
보정계수	② 해양활동 복잡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도(上) : 1.20 강도(中) : 1.10 강도(下) : 1.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해안선 길이</th> <th>유인도서 수</th> <th>항만 수</th> <th>해수욕장 수</th> <th>해양활동 복잡도</th> <th>보정 값</th> <th>강도</th> </tr> </thead> <tbody> <tr> <td>부산</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하</td> </tr> <tr> <td>충남</td> <td>1.04</td> <td>1.02</td> <td>1.07</td> <td>1.07</td> <td>1.28</td> <td>1.10</td> <td>중</td> </tr> <tr> <td>전남</td> <td>1.20</td> <td>1.20</td> <td>1.20</td> <td>1.12</td> <td>2.31</td> <td>1.20</td> <td>상</td> </tr> <tr> <td>전북</td> <td>1.00</td> <td>1.02</td> <td>1.00</td> <td>1.00</td> <td>1.02</td> <td>1.00</td> <td>하</td> </tr> <tr> <td>경기</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하</td> </tr> <tr> <td>경북</td> <td>1.00</td> <td>1.00</td> <td>1.06</td> <td>1.05</td> <td>1.12</td> <td>1.10</td> <td>중</td> </tr> <tr> <td>울산</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하</td> </tr> <tr> <td>제주</td> <td>1.00</td> <td>1.00</td> <td>1.04</td> <td>1.00</td> <td>1.10</td> <td>1.10</td> <td>중</td> </tr> <tr> <td>경남</td> <td>1.07</td> <td>1.05</td> <td>1.13</td> <td>1.06</td> <td>1.44</td> <td>1.10</td> <td>중</td> </tr> <tr> <td>인천</td> <td>1.03</td> <td>1.03</td> <td>1.00</td> <td>1.00</td> <td>1.11</td> <td>1.10</td> <td>중</td> </tr> <tr> <td>강원</td> <td>1.00</td> <td>1.00</td> <td>1.05</td> <td>1.20</td> <td>1.26</td> <td>1.10</td> <td>중</td> </tr> </tbody> </table>		구분	해안선 길이	유인도서 수	항만 수	해수욕장 수	해양활동 복잡도	보정 값	강도	부산	1.00	1.00	1.00	1.00	1.00	1.00	하	충남	1.04	1.02	1.07	1.07	1.28	1.10	중	전남	1.20	1.20	1.20	1.12	2.31	1.20	상	전북	1.00	1.02	1.00	1.00	1.02	1.00	하	경기	1.00	1.00	1.00	1.00	1.00	1.00	하	경북	1.00	1.00	1.06	1.05	1.12	1.10	중	울산	1.00	1.00	1.00	1.00	1.00	1.00	하	제주	1.00	1.00	1.04	1.00	1.10	1.10	중	경남	1.07	1.05	1.13	1.06	1.44	1.10	중	인천	1.03	1.03	1.00	1.00	1.11	1.10	중	강원	1.00	1.00	1.05	1.20	1.26	1.10	중
		구분		해안선 길이	유인도서 수	항만 수	해수욕장 수	해양활동 복잡도	보정 값	강도																																																																																									
		부산		1.00	1.00	1.00	1.00	1.00	1.00	하																																																																																									
충남	1.04	1.02	1.07	1.07	1.28	1.10	중																																																																																												
전남	1.20	1.20	1.20	1.12	2.31	1.20	상																																																																																												
전북	1.00	1.02	1.00	1.00	1.02	1.00	하																																																																																												
경기	1.00	1.00	1.00	1.00	1.00	1.00	하																																																																																												
경북	1.00	1.00	1.06	1.05	1.12	1.10	중																																																																																												
울산	1.00	1.00	1.00	1.00	1.00	1.00	하																																																																																												
제주	1.00	1.00	1.04	1.00	1.10	1.10	중																																																																																												
경남	1.07	1.05	1.13	1.06	1.44	1.10	중																																																																																												
인천	1.03	1.03	1.00	1.00	1.11	1.10	중																																																																																												
강원	1.00	1.00	1.05	1.20	1.26	1.10	중																																																																																												
	③ 지자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1개 : 1.00 지자체 2개 이상 : 1.10 																																																																																																	
	④ 축척별 난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만 미만 : 1.00 1/3만 초과 ~ 1/35 미만 : 1.29 1/35 초과 : 1.14 																																																																																																	

주 1) 해양활동 복잡도 : 해양공간 특성평가 대상 지역의 해안선길이, 유인도서, 항만, 해수욕장을 고려한 보정계수로써, 각 지역별 강도를 참고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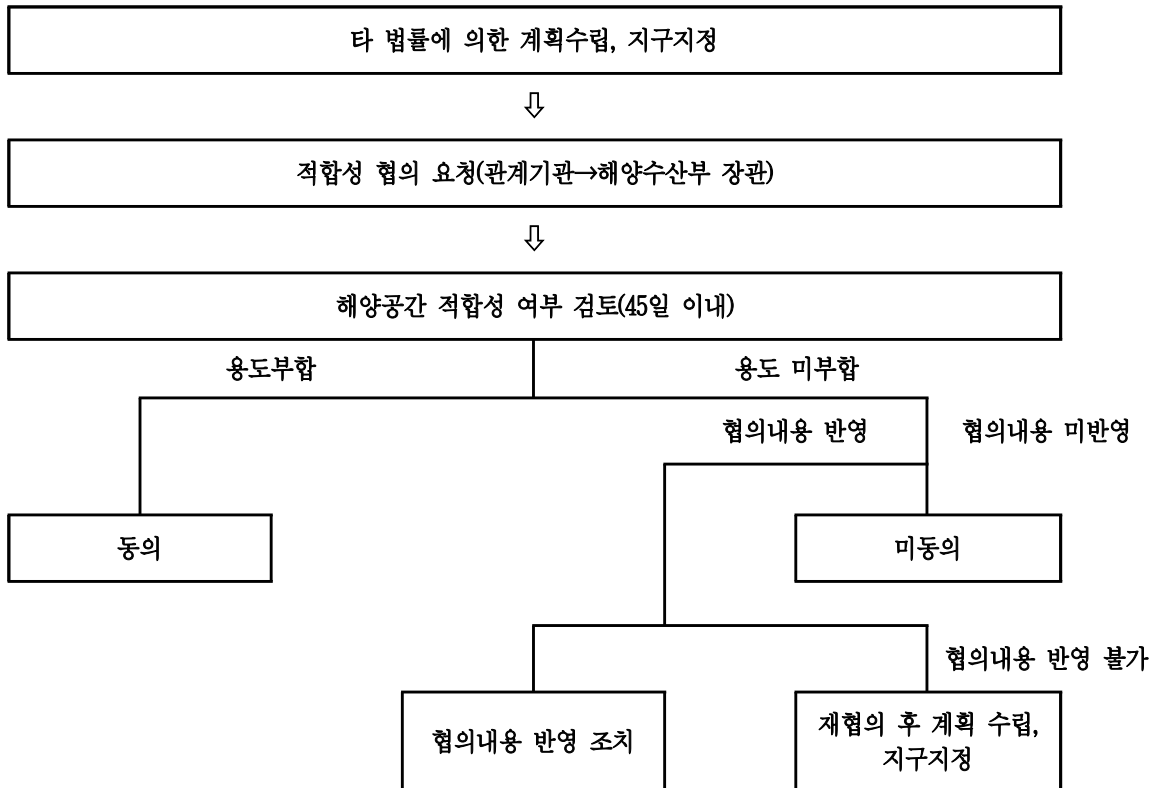
▶ **제4장 해양공간 적합성협약의**

제 4 장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가. 정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에 해당되며,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란 해양공간에서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해양공간에서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채취에 관한 계획,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항만·어항의 개발에 관한 계획, 해양공간에서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해양에너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어장의 개발에 관한 계획, 그 밖의 해양자원 이용·개발에 관한 계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는 적합성협의를 말한다.

나. 추진절차



다. 업무별 주요내용

기본 업무		업무 정의
사업개요	사업개요 파악	·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 대상 사업 개요 파악, 추진배경 및 목적/추진근거, 요청기관/계획기간/계획 수립의 주요 경위 등 파악
	대상 지역 설정	·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 대상 지역 설정(대상 지역 선정 사유 포함)
자료수집	공간현황조사	· 사회/경제/자연 환경 현황 조사, 타법률에 따른 현황 조사 (각종 보호구역·보전지역, 국가보호종, 해양시설물 관리, 환경기준 등)
	공간이용수요조사	· 이용/개발 수요 및 계획 조사(기간, 입지, 규모, 근거 법률, 주요 내용 등)
	해양공간관리현황조사	· 대상 해양공간의 해양공간계획 정책방향 조사, 대상 해양공간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 조사
검토 및 평가	공간계획 부합성 검토 및 평가	· 해양공간계획정책방향과의 부합성, 용도구역 관리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및 평가
	입지 적절성 검토 및 평가	· 다른 활동과의 영향관계 검토, 생태/환경 영향 검토 및 평가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 계획규모의 적정성 검토, 사회/경제영향 검토 및 평가
	공간특성평가 부합성 검토 및 평가	· 공간특성평가 결과와의 부합성 검토
성과품 작성	DB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자료처리 및 분석 결과 도면화, 공간정보데이터 파일 구축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해도제작시 특성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변경) 참고)

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기준인원수)

기본 업무		단위	기준인원수(인·일/단위)				환산 및 보정계수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사업개요	사업개요 파악	식	0.50	0.80	0.80	0.30	②③
	대상 지역 설정	식	0.30	1.00	0.70	0.60	②③
자료수집	공간현황조사	10,000(m ²)	0.40	1.70	2.40	2.60	①②③
	공간이용수요조사	10,000(m ²)	0.50	1.50	1.90	2.20	①②③
	해양공간관리현황조사	10,000(m ²)	0.20	0.80	0.90	1.10	①②③
검토 및 평가	공간계획 부합성 검토 및 평가	10,000(m ²)	1.60	2.50	2.20	1.70	①②③
	입지 적절성 검토 및 평가	10,000(m ²)	1.50	2.30	2.20	1.60	①②③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10,000(m ²)	1.50	2.30	2.00	1.60	①②③
	공간특성평가 부합성 검토 및 평가	10,000(m ²)	1.80	2.30	2.30	1.60	①②③
성과품 작성	DB 및 정보시스템 구축	식	0.20	0.70	1.10	1.10	
	보고서 작성	식	0.90	1.30	1.50	1.40	

마.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구분	항목	세부내용	비고
환산계수	① 면적	$\bullet \left(\frac{A}{10,000} \right)^{0.20}$ ※ A = 사업 대상면적	소수점 2째 자리 이하 버림
보정계수	② 해양활동 상충도	• 일반사업 : 1.00 • 특수사업 : 1.70	
	③ 지자체 수	• 지자체 1개 : 1.00 • 지자체 2개 이상 : 1.10	

주 1) 해양활동 상충도 : 특수사업 - 관리계획 수립(변경) 대상 용도구역이 현 지정된 용도구역의 핵심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등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
 ex) 어업활동보호구역⇨에너지개발구역, 환경·생태관리구역⇨해양관광구역